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15 발의연월일: 2023. 7. 25.

발 의 자:강병원·홍정민·유정주

송재호 · 오영환 · 고영인

정일영 · 임호선 · 강민정

이동주 • 이해식 • 위성곤

권칠승 · 김영주 · 김교흥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요건으로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지 원 대상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일 것, 사회 재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 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사회재난과 달리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피해금액이 국고 지원대상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지 먼저 판명되어야 하므로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소 수 일에서 수 주가 소요되어 시급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되는 비용으로 제대로 된 복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상가건물 등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를 입으나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 규정이 없어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재난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 이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 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해당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하고,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 도록 하며, 복구비 지원 내용에 상업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을 추가하 려는 것임(안 제60조 등).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 2.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제66조제3항제2호 중 "주거용"을 "주거용 및 상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3항 제1호·제2호·제5호·제5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용 건축물 지원 및 복구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u>대통령령으</u>	<u>다음 각 호</u>
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u><신 설></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u> <신 설></u>	2.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
	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재
	<u>난 또는 사회재난</u>
<u> <신 설></u>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②·③ (생 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 1. (생략)
- 2. <u>주거용</u> 건축물의 복구비 지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
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
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
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u>주거용 및 상</u>업용-

원

3. ~ 9.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4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
<u>여 제3항제1호・제2호・제5호</u>
•제5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